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0월 26일 김문호, 김관수 의원등
12인 의원 발의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07년 12월 11일) 상정
- 제14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07년 12월 11일) 수정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문호 의원)

□ 제안이유

-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180일 이전부터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 함.(안 제3조)
- 나.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둘째아는 1인당 50만원을, 셋째아 이상은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각각 지원함.(안 제4조)

- 다. 출산장려금 지원안내,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대장에 기록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대장을 비치·기록하도록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조례안 원안 통과시 예산은 어느정도 투자된다고 보는지?	○ 21억 정도 투자되며, 향후 약 30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보임.
○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일명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여 연차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조례안처럼 현금지급 정책은 선심성 정책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향후 폐지가 권고될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 중앙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인구유입 정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시·군이 많은데 부천시 여건에 적합하다고 보는지?	○ 초등학교의 경우 매년 1개 학급씩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지급되던 출산장려금도 중단된 상태에 있음.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성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심각한 상황이며, 타 시·군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저출산 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봄.
○ 정부정책의 흐름에 맞춰 현금지원 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강화하는 제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정부정책도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효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출산시 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았는가? ○ 셋째아부터 50만원씩 지원하면 재정 부담은 얼마나 되는가? ○ 저출산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임. 지금도 15가지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시 재정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론임. 보험제도는 보험료 납부 기간동안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증가하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되며, 보험제도는 진출자에 대한 자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연간 3억에서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임.(가정복지과장) ○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겠음.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출산장려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며, 1회성 현금지원 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적극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174호
의결 년월일	2007. 12. 21 (제140회)

제안년월일 : 2007. 12. 11.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미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다양하고 광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신생아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협의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수정함.
-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에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천시의 출산장려 정책의지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담아 지원액을 하향 조정함.

2. 주요골자

- 제명을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함.
-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셋째아 이상에게 각각 30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4조)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중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4조중 “둘째아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한다”를 “셋째아 이상에게 각각 30만원을 지원한다”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과 동일함.』

신·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부천시 <u>신생아 출산</u> 지원에 관한 조례안</p> <p>제4조(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u>둘째아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각각 지원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출산장려금 -----</p> <p>제4조(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 ---- -----, <u>셋째아 이상에게 각각 30만원을</u> ----. -- -----.</p>

[수정안 포함]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신생아의 탄생 축하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 및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180일 이전부터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4조(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셋째아 이상에게 각각 3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각각 지원한다.

제5조(출산장려금의 지원안내) 시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출산장려금의 지원신청)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신생아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출산장려금의 지원절차)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활용한 조사와 현지조사를 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출산장려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환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보 호 자	부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신 생 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와 관계			
	출생 의료기관		출생신고 일 자	년 월 일
	출생내역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쌍둥이 이상(명)		
보 호 자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예금통장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p>「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소:</p> <p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와의 관계 :</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부천시장 귀하</p>				
첨부서류: 신생아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